

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함진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2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20.

발의자 : 함진규 · 김기선 · 이채익

정유섭 · 이철규 · 이은권

안상수 · 김태흠 · 홍문표

최경환 · 윤영석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불임·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실정임.

이에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).

#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7호 및 제7호의2의”를 “제7호부터 제7호의3까지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때(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)”를 “때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3.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
제45조제1항제1호 중 “제44조제1항제1호의”를 “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불임·난임의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<p>하되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/p> <p>2. ~ 11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</p>	<p>-----. -----. -----. -----. -----. -----. 2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